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7월 3일, 남인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9.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의원)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로 하여금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만을 국가가 정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년~'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율이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100.1%('22년), 100.2%('23년), 100.2%('24년)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국고지원시설의 경우에는 93.4%('22년), 94.1%('23년), 95.3%('24년)에 불과하여 다년간 실제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국가를 포함하고 인건비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오세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지침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3년마다 조사·공표하고 있는데, 해당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은 제외하고 있음.

인건비 등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복지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다만,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양호한 상태로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준수 노력이 아닌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기¹⁾를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거나 적용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1)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